## 동해시 고시 제2016-53호

##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

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어선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낚시 관리 및 육 성법 제35조(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)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어업자 및 승객의 준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. 6. 17.

## 동 해 시 장

- 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제35조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 전 운항과 수질오염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(이하 "법" 이라한다) 제25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자(선원 포함) 및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제3조(영업시간) 낚시어선업의 영업시간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한다.
- 제4조(영업구역)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은 강원도 관할수역 해안선으로부터 7마일 이내 수역으로 한다. (단, 2톤 미만 선외기 낚시어선은 3마일 이내 수역으로 한다)
- **제5조(안전운항 준수사항)** ①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「군사시설보호법」, 「항만법」, 「개항질서법」 등에 의한 제한 및 통제구역으로 유어객을 안내하는 행위를 금한다.
- 2.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갯바위 및 간출암 등에 승객을 하선 시키는 행위를 금한다.
- 3.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 전 항해·통신·기관·추진장치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.
- 4. 낚시어선업자 · 선원은 승선하려는 낚시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선자 명부의 기재내용을 확인 · 유지 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.
- 5. 충돌, 좌초 또는 그 밖에 승객의 위급한 상황 및 해상 추락사고 등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고, 인명구조활동 등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② 낚시어선 승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1.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2.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
  - 3.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안전운항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4. 불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·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5. 바다에 유류, 분뇨, 폐기물 등을 투기하는 행위를 금한다.
  - 6. 선원 및 승객 전원은 어선의 입·출항 및 항해 중에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한다.
  - 7. 낚시어선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선내 기타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8. 승선자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의 신분증제시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9.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요구하는 '승선자 명부' 작성 시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거짓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
- 제6조(기타 준수사항)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를 하고자 승선하는 승객에 대하여 출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시킨 후 출항 하여야 한다.
  - 1. 낚시어선의 승객은 안전 운항 등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
  - 2. 낚시승객은 선상에서 낚시 중 기상악화예견 등으로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안전대피를 위한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.
  - 3.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요구하는 '승선자 명부' 작성 시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거짓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하며,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승객에게 정확한 작성을 요구하고 허위 작성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.
  - ② 낚시어선업자는 타 시·군 의 관할 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에 대하여 관할 시장·군수가 법 제35조에 따라 명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지고시) 고시 제2015-60호 「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 사항 고시」는 폐지한다.